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상 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훈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는 서훈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포상지침의 근거, 서훈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 서훈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훈법」(제10조)에서 위임된 서훈의 취소절차 마련

- 1) 서훈의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범죄에 따라 형을 받아 취소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2) 서훈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훈 취소를 위해 공판기록, 범죄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포상업무지침」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대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훈법시행령에 지침 제정·운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다. 서훈관련 기록관리 강화(안 제32조)

서훈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서훈 관련 기록물별로 적정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서훈을 추천하는 방법, 절차, 제한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8조”로, “취소하거나 패용을 금지”를 “취소”로, “한다.”를 “하고,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을 받은 자가 법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은 자의 공판기록, 범죄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을 추천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서훈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훈기록부 : 영구
2.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 준영구
3. 정부포상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4. 기타 증빙서류 등 : 1년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4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위임장

< 위임한 사람 >

훈장명(포장명)		상훈기록번호 제	호
소속 / 직위			
주소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훈장(포장)을 받을 것을 위임합니다.

< 위임받은 사람 >

소속 / 직위	
주소	
전화번호	
성명	
위임한 사람과의 관계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훈의 추천)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3조(서훈의 추천)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서훈을 추천하는 방법, 절차, 제한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
제10조(서훈의 취소) <u>법 제8조에</u> 따라 서훈을 <u>취소하거나 패용을 금지</u> 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u>한다</u> . <u><단서 신설></u>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u>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8조-----</u> ----- ----- <u>취소--</u> <u>하고,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u> 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u>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u> <u>②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을 받은 자가 법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은 자의 공판기록,</u>

제32조(기록부 비치)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u>범죄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 제32조(기록부 비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을 추천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u> <u>④ 서훈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서훈기록부 : 영구</u> <u>2.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 준영구</u> <u>3. 정부포상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u> <u>4. 기타 증빙서류 등 : 1년</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4092